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

『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,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4년 10월 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으로 교섭단체간 상호 원활한 합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인천광역시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7장(제36조) 신설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05, 팩스 032-440-8762, 이메일 : jong096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의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도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0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9 . 25 .

발 의 자 : 이도형·조계자·이한구의원

(찬성자 5 인)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으로 교섭단체간 상호 원활한 합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인천광역시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7장(제36조)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(제36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교섭단체

제36조(교섭단체 구성)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 대표의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은 그 정당의 소속 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 명부 대신 소속 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장 교섭단체 제36조(교섭단체 구성)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은 그 정당의 소속 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 명부 대신 소속 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	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○ 제22조(조례) ☐ 국회법 ○ 제33조(교섭단체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국회법」

제33조(교섭단체) ①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 당 없 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

4. 작성자

- 건설교통위원회 이 도 형 의원